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472
----------	-------

발의연월일 : 2026. 1. 30.

발 의 자 : 윤상현 · 이현승 · 김소희
서일준 · 김선교 · 김 건
강대식 · 임종득 · 우재준
김위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인자가 구직자에 대하여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과 같은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면접 시험에서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해당 직무의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정보에 관하여 질문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규율하는 명확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채용과정에서 직무 능력과 무관한 요소가 평가에 반영될 우려가 있음.

이에 구인자가 면접 시험에서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구직자에게 질문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채용 과정

에서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 및 제17조).

법률 제 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집하여서는”을 “수집 또는 면접 시험에서 질문하여서는”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제3호 중 “수집한”을 “수집 또는 면접 시험에서 질문한”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 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 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 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u>수 집하여서는</u> 아니 된다.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 ----- ----- -----수 <u>집 또는 면접 시험에서 질문하 여서는</u>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7조(과태료) ① (생 략)	제17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제4조의3을 위반하여 그 직 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 자료로 <u>수집한</u> 구인자	3. ----- ----- ----- -----수집 또는 면접 시험에 <u>서 질문한</u> -----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